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9년 9월 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19.(목) 오후 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9. 19. (목)	담당부서	불공정무역조사과
담당과장	조택연 과장(044-203-5880)	담 당 자	(적외선가열조리기) 곽중환 사무관(5886) 이재철 주무관(5885)
			(가방) 이은주 주무관(5887)
			(양말편직기계) 조호정 사무관(5888) 이재철 주무관(5885)

무역위원회, 적외선가열조리기·가방 지식재산권 침해 등 2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및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등 1건의 조사개시 결정

- '19. 9. 19일, 제392차 무역위원회 개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**는 9월 19일(목) **제392차 회의**를 개최하여 「**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·실용신안권 침해**」및 「**가방 상표권 침해**」등 2건에 대한 **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**하였고,

○ 「**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**」에 대한 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**한다고 밝혔음

[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 침해 판정]

□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·실용신안권 침해 조사건은 주방용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(주)자이글이

○ 국내 기업 A, B, C 사가 자사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(1차 : '17.12.21일, 2차 : '18.3.8일)된 건임

□ 무역위원회는 그간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, 현지조사, 기술설명회, 전문가 감정 등을 거쳤으며,

○ 그 결과, **피신청인(국내 기업 A, B, C)이 수입·판매한 적외선 가열조리기는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은 침해하지 않았으나,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**한다고 판정하였음

□ 무역위원회는 동 판정 결과에 따라, 적외선 가열조리기를 수입·판매한 A, B, C 사에게 침해품의 ①**수입·판매 행위 중지**, ②**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, 과징금을 부과**하였음

[가방 상표권 침해 판정]

□ 가방 상표권 침해 조사건은 ㈜케어링코리아*가 구찌가방과 유사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국내 사업자 D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('19.5.15일)된 건임

* 구찌(상표권자) 지주회사(케어링社)의 한국법인

□ 무역위원회는 국내 사업자 D를 대상으로 서면조사, 현지조사 등을 진행하여 상표권 침해여부를 조사하였고,

○ 그 결과, **국내 사업자 D가 수입한 가방은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**한다고 판정하였음

□ 무역위원회는 동 판정 결과에 따라, 가방을 수입한 국내 사업자 D에게 침해품의 ①**수입 행위 중지**, ②**재고 폐기처분**, ③**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, 과징금을 부과**하였음

[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]

□ 양말편직기계를 제조·판매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업인 로나티 에스피에이(Lonati S.p.A., 이하 '로나티'라 함)는 '19.8.8일 국내 사업자 E를 상대로 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**하였음

○ 로나티는 **국내 사업자 E가 자사의 특허권*을 침해한 양말편직기계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**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함

* 스타킹 등의 가장자리(발가락 부위)를 보다 간단하게 봉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의 구성 및 구동방법을 개량한 특허

□ **무역위원회**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, **특허권이 유효**하고, 피신청인의 **불공정무역행위 가능성**이 있다고 판단하여 **조사 개시를 결정**하였음

○ 무역위원회는 향후 **6~10개월간 서면조사, 현지조사** 등을 거쳐 **불공정무역행위 여부**를 **판정**할 예정임

□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'무역위원회의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입 및 수출 행위가 특허·상표·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'불공정무역행위'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(6개월 이내)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'며 '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'고 밝혔음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곽중환 사무관(☎044-203-5886), 조호정 사무관(☎044-203-5888), 이은주 주무관(☎044-203-58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